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시흥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 실태 등 -

2019. 9.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	2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2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3
1. 시흥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개요	3
2. 사업 추진 경과	3
3. 공장 이주대책 추진 경과	4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사항	7
(1)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 업무 부적정(주의)	7
3. 종결처리 사항(감사실시 과정에서 불문 처리)	11
[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1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2009. 12. 3. 지정된 시흥은계보금자리 주택지구(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은행동 일원 2,011천 m², 이하 “시흥은계지구”라 한다)에 총 13,192호의 공동주택(일반분양 3,660호, 공공주택 9,532호)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구인(A)은 공장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시흥시는 시흥은계지구 내 준주거지역(자족시설용지)에서도 종전과 같이 공장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와 LH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면 2019. 3. 19.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19. 6. 26. 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3개 사항(①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는지 여부, ②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공고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③ 공장 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부당 전매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8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참조)하였으며 2019. 6. 26.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3개 사항을 중심으로 LH가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7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LH의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2019. 9. 2.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¹⁾

1. 시흥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개요

-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은행동 일원
- 사업면적: 2,010,771.8m²(1단계 1,267,347.2m², 2단계 743,424.6m²)
- 건설호수: 총 13,192호(일반분양 3,660호, 공공주택 9,532호)
- 사업기간: 1단계: 2009. 12. 3.~2019. 3. 31.
2단계: 2009. 12. 3.~2019. 12. 31.
- 사업시행자: LH
- 사업비: 1조 3,688억 원

2. 사업 추진 경과

- 2009. 12. 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부)
- 2010. 4. 27.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부)
- 2012. 10. 31. 조성공사 착공(LH)
- 2015. 3. 25.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부)
 - B-1블록(공공분양아파트) 공공조경구간(6m) 반영, 사업기간 연장 등
- 2015. 12. 17.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국토부)
 - B-1블록(공공분양아파트) 공공조경구간 확대(6m→10m) 반영 등
- 2018. 12. 31.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국토부)
 -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확대, 학교 출입구 반영 등
- 2019. 3. 31. 1단계 사업준공
- 2019. 12. 31. 2단계 사업준공 예정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3. 공장 이주대책 추진 경과

- 2010. 4. 27.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2011. 11. 29. 시흥은계지구 내 공장 이주대책 요구(시흥시→LH)
- 2011. 12. 16. 시흥은계지구 내 공장 이주방안 회신(LH→시흥시)
 - 자족시설용지로 수용, 인근 산업단지로 알선, 통합 산업단지 조성 검토
- 2012. 4. 5. 시흥은계지구 내 공장 이전대책 수립 재촉구(시흥시→LH)
- 2012. 4. 26. 시흥은계지구 내 공장 이주대책 수립 촉구에 대한 회신(LH→시흥시)
- 2012. 8. 7. 시흥은계지구 내 공장 이주대책 수립(LH→경기도, 시흥시)
- 2012. 9. 14. 시흥장현지구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경기도, LH)
- 2013. 1. 14. 시흥장현지구 공업지역 지정 관련 주민대표자 회의 개최
- 2013. 1. 24. 시흥장현지구로의 공장 이전안 즉각 철회 촉구(능곡입주연합→LH)
- 2013. 2. 21. 공업지역 지정추진 철회 및 대책 수립 촉구(2차)(시흥시→LH)
- 2013. 4. 1. 시흥장현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추진 철회 및 대책 수립 촉구(3차)
(시흥시→LH)
- 2013년 4~5월 시흥장현지구 내 공업지역 반대에 따른 공장 이전방안 협의(국토부, LH)
- 2013. 6. 17. 국회 국토해양위에 국토부 업무보고
- 2013. 6. 26. 시흥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로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조례 개정 요청(국토부→시흥시)
- 2013. 9. 23. 시흥시 조례개정 입법 예고
- 2013. 12. 12. 시흥시 조례개정 공포·시행(공포 즉시 효력 발생)
- 2014. 8. 11. 시흥은계지구 내 기존 공장에 대한 공장 이주대책 수립(LH)
 -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시흥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공급
- 2015년 6월~2017년 11월 공장 이주대책대상자(59개 업체)에게 시흥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43필지(68,296㎡) 공급

I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청구인이 제기한 11개 청구사항 중 감사실시가 결정된 3개 사항(①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는지 여부, ②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채래식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공고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③ 공장 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부당 전매되었는지 여부) 중 ①번 사항과 관련하여 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 업무 부적정

- LH는 “공장 이주대책 시행(안)” 을 수립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이주대책용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 B 등 3개 업체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 4,522㎡보다 3,162㎡ 많은 7,684㎡가 공급되는 결과 초래
- 한편,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11필지 26,838㎡에 대해서는 61개 업체가 계 106,311㎡의 분양을 신청했는데 추첨을 통해 11개 업체에 공급되었고, 공급률은 25.2%에 불과
- 이와 같이 수립지침과 다른 공장 이주대책 시행으로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장 이주대책 용지가 과다 공급되고 그만큼 일반 수요자에게 공장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결과 초래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3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②번과 ③번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LH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 종결처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자족시설용지 내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 미고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 시공업체, 주택의 건설 위치 및 공급세대수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 △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은 자족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규정
 - 이에 따라 자족시설용지에 실제 입주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에서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과 시흥시의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
- ⇒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자족시설용지 내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종결처리

③ 공장 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이주대책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
-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된 공장 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전매가 승인된 24필지에 대하여 전매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공장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등에 따라 LH의 동의를 받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확인됨

⇒ 공장 이주대책용지 전매 및 승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종결처리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조 치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2009. 12. 3. 지정된 시흥은계보금자리 주택지구(이하 “시흥은계지구”라 한다)에 [표 1]과 같은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상자”라 한다)에게 새로이 조성된 자족시설용지를 공장 이주대책용지(이하 “공장 대책용지”라 한다)로 공급하는 내용의 시흥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을 2014. 8. 11. 마련·시행하였다.

[표 1] 시흥은계지구 사업 개요

구분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동 일원
▪ 사업면적	▪ 2,010,771.8㎡(1단계 1,267,347.2㎡, 2단계 743,424.6㎡)
▪ 건설호수	▪ 총 13,192호(일반분양 3,660호, 공공주택 9,532호)
▪ 자족시설용지	▪ 130,192㎡
▪ 사업기간	▪ 1단계: 2009. 12. 3.~2019. 3. 31., 2단계: 2009. 12. 3.~2019. 12. 31.
▪ 사업비	▪ 13,688억 원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LH 내규)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공장 대책 용지의 공급면적은 기존 공장건축물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누어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 [별표 1]에는 업종 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대상자에게 공장 대책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공장 대책용지를 공급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상자에게 공장 대책 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하는 내용의 별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만큼 일반 수요자에게 공장 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등 양자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 시흥은계지구 보상업무담당 과장 C는 2014. 8. 11. “시흥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 시행(안)”을 수립하면서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장 대책용지는 이 건 수립지침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서는 [표 2]와 같이 1순위자와 2순위자에 대해서는 공급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차장 D에게 결재를 올렸다.

[표 2]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장용지 공급면적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대상	자가영업협의양도자	자가영업수용보상자	임차영업보상자	영업시설이전비보상자
면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조면적 5배 이내	제조면적 1배 이내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차장 D, 부장 E는 이 건 수립지침과 달리 마련된 “시흥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 시행(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각각 결재함으로써 그대로 시행(최종 결재: 본부장 F)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순위인 B(대표 ○○○)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 1,560㎡(건축물 면적 187.2㎡/기준공장면적률 0.12)보다 2,130㎡가 많은 3,690㎡를 공급받는 등 [표 3]과 같이 3개 업체에 3,162㎡가 과다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3] 공장용지 초과공급 내역

(단위: ㎡, 백만 원)

이주대상자		공급일자	수립지침 기준			이주대책 기준		과다공급 면적 (E-C)
업체명 (대표자, 순위)	업종		건축물 면적(A)	기준공장 면적률(B)	공급면적 (C=A/B)	제조면적 (D)	공급면적 (E)	
B (○○○, 1순위)	수배전반	2015. 9. 8.	187.2	0.12	1,560	187.2	3,690	2,130
G (□□□, 2순위)	기계부품	2015. 6. 26.	172.6	0.12	1,438	172.6	1,604	166
H (△△△, 2순위)	통신부품	2015. 9. 7.	182.9	0.12	1,524	596.0	2,390	866
소계 (3개 업체)			542.7	-	4,522	955.8	7,684	3,162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11필지 26,838㎡에 대해서는 61개 업체(필지별 중복 신청 포함)가 계 106,311㎡의 분양을 신청했는데 추첨을 통해 11개 업체에 공급되었고, 공급률은 25.2%(26,838㎡/106,31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다른 공장 이주대책 시행으로 이주 대상자에게 공장 대책용지가 과다 공급되고 그만큼 일반 수요자에게 공장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참고로 이주대상자에게 공장 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2항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따라 공장 대책용지는 [표 4]와 같이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되, 협의양도자에 대해서만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장용지 공급가격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대상	자가영업협의양도자	자가영업수용보상자	임차영업보상자	영업시설이전비보상자
가격	· 기존면적: 조성원가의 80% · 추가면적: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LH는 이주대상자에게 공장용지를 과다 공급한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장 이주 대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종결처리 사항(감사실시 과정에서 불문 처리)

가. 자족시설용지 내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 미고지

청구인은 LH가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 시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공분양주택 분양 공고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H는 2017. 4. 27. 1,198명의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시흥은계지구 공공분양주택(B-1블록)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다.

[표 1]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개요

구분	내용
▪ 공급위치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198세대(전용면적 74㎡ 610세대, 84㎡ 588세대)
▪ 청약접수	▪ 2017. 5. 10.~2017. 5. 12.
▪ 당첨자발표	▪ 2017. 5. 24.~2017. 5. 26.
▪ 계약기간	▪ 2017. 6. 26.~2017. 6. 28.
▪ 지구여건	▪ B-1블록과 인접하여 당해지구 북측에는 자족시설이 위치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한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에 사업주체, 시공업체, 주택의 건설 위치 및 공급세대수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입주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LH가 자족시설용지 내 입주 가능한 시설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 삼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국토부 훈령) 제4절 용어 정의에 자족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시설(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 판매·유통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고, 자족시설용지에 실제 입주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에서 허용하는 용도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업계획과 시흥시의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자족시설용지 내 입주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LH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에 자족시설용지 내 소규모 공장의 입주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하였다.

나. 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 조장

청구인은 이주대상자에게 공급된 공장 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다며, 공장 대책용지 전매 승인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H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주대상자(59개 업체)의 공장 대책용지로 자족시설용지(계 43필지, 68,296㎡)를 공급하였고, 이 중 36개 업체가 계 24필지, 39,195㎡를 특정인에게 전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따르면 이주대책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취득세 신고자료, 법인 장부 등을 바탕으로 공장 대책용지 전매(24필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이주대상자들이 LH의 동의를 받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등 [표 2]와 같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결처리하였다.

[표 2] 공장용지 전매의 적정성 확인 내역

전매취득자	필지수	확인한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검인	취득세 신고자료	법인 장부
개인 (21개 업체)	16	공급가격 이하	공급가격 이하	공급가격 이하	해당 없음
법인 (8개 업체)	8	공급가격 이하	공급가격 이하	공급가격 이하	공급가격 이하
계: 29개 업체	24	-	-	-	-

[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연번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국토교통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부당하게 요구 ▪ 검토 결과: 이 건 관련 조례가 개정(국토교통부 조례개정 요구: 2013. 6. 26., 시흥시 조례개정: 2013. 12. 12.)된 지 5년이 경과,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및 제19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시흥은계지구 사업의 주무부서는 담당 부서(도시정책과) 협조 없이 시흥시에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부당하게 발송 ▪ 검토 결과: 이 건 관련 공문이 발송(2013. 6. 26.)된 지 5년이 경과,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및 제19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국토교통부는 시흥은계지구와 마찬가지로 공장 이주대책이 필요한 부천옥길지구 소관 부천시에는 조례의 개정을 미요청 ▪ 검토 결과: 이 건 관련 업무 처리가 있는 지(2013. 6. 26.) 5년이 경과,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및 제19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다른 지역에 공업지역을 조성하거나 인근 산업단지에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흥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를 공장 이주대책용지로 부당 제공 ▪ 검토 결과: 산업단지 신규조성 등을 통한 공장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게 되자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한 것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공장과 주거지역을 분리하지 않고 완충녹지도 설치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 및 지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 ▪ 검토 결과: 자족시설용지와 주거지역을 37m 분리하였고, 관계 법령 및 지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라 자족시설용지에 완충녹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도 조경 구간(폭 10m)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곤란,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연번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시흥은계지구의 자족시설용지 중 일부에 대해 사전공고 없이 공장주에게 선분양하고,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공고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 ▪ 검토 결과: 자족시설용지를 선분양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국토교통부 요청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조례 개정안의 결정 및 시의회 제안 과정의 적정성 확인 필요 ▪ 검토 결과: 이 건 관련 조례가 개정(국토교통부 조례개정 요구: 2013. 6. 26., 시흥시 조례개정: 2013. 12. 12.)된 지 5년이 경과,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및 제19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요지: 시흥시는 시흥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장집적을 언급하는 등 공장용지라는 인식을 하고도 이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에 반영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 ▪ 검토 결과: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에 기존 공장 중 개정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한 이전대상을 제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완충녹지의 설치를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직무유기로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종결처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